

의안번호	2213405
의 퇴 인	전현희의원
회 답 일	2025.9.30.
추 계 번호	25D5169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을 승계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시나리오 별로 다음과 같이 추계됨

- (시나리오1) 참전명예수당 100% 수준으로 지급 시, 총 5,943억 7,400만원
- (시나리오2) 참전명예수당 70% 수준으로 지급 시, 총 4,161억 3,200만원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시나리오1 (참전명예수당의 100% 수준 지급)	41,743	81,988	120,489	157,396	192,758	594,374	118,895
시나리오2 (참전명예수당의 70% 수준 지급)	29,290	57,392	84,342	110,177	134,931	416,132	83,226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의2(권리의 보호)	제6조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됨(제2항)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의2(권리의 보호)	0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인원에 참전명예수당 단가를 곱하여 추정하되, 참전명예수당 단가를 참전유공자의 100% 수준(시나리오1)과 70% 수준(시나리오2)으로 구분적용하여 추계함
- 본 추계에서 참전명예수당 수권배우자 인원은 참전유공자 연도별 사망 추정 인원에 무공수훈자 배우자 비율 평균값(76.95%)¹⁾을 적용하여 추정함

[표 2] 참전유공자 연도별 인원: 2020~2024년

(단위: 명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증감률
참전유공자	173,733	161,577	146,932	132,479	120,190	△8.80%

자료: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[표 3] 참전유공자 연도별 인원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명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증감률
참전유공자	91,171	83,148	75,832	69,159	63,073	△8.80%

주: 2024년 기준 참전유공자 인원(120,190명)에 연평균증감률(△8.80%)을 적용하여 추정함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4] 참전명예수당 수권배우자 인원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명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
참전유공자 인원		91,171	83,148	75,832	69,159	63,073
신규발생 수권배우자	참전사망자	8,797	8,023	7,317	6,673	6,086
	배우자비율	76.95%	76.95%	76.95%	76.95%	76.95%
	수권배우자	6,769	6,173	5,630	5,135	4,683
	누계인원	6,769	12,397	17,028	20,790	23,797

주: 1. 참전사망자 인원은 전년도 참전유공자 인원에서 해당연도 참전유공자 인원을 차감하여 산출함
2. 수권배우자는 참전유공자의 연도별 사망 인원에 배우자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함
3. 누계인원은 전년도 누계인원에 무공수훈자 수권배우자의 사망률(2023년 기준 8.06%)을 적용한 인원과 해당연도 신규발생 수권배우자 인원을 합산하여 추정함
자료: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1) 무공수훈자 배우자 비율: 2020~2024년

(단위: 명)

구분		2020	2021	2022	2023	2024	평균
무공수훈자	등록인원	18,071	16,516	14,830	14,049	12,065	15,106
	배우자 인원	14,780	12,661	11,345	10,123	9,211	11,624
	배우자 비율(%)	81.79	76.66	76.50	72.05	76.34	76.95

자료: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- 본 추계에서 수권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단가는 참전유공자 대비 100%과 70% 수준으로 구분하되, 최근 7년(2019~2025년) 참전명예수당 단가 상승률²⁾을 적용하여 추정함

[표 5]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천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
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		515	551	590	631	675
수권배우자	참전유공자의 100%	515	551	590	631	675
	참전유공자의 70%	361	386	413	442	47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법안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

-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참전명예수당 수급권 승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 기간 동안 수권배우자 추정 인원에 참전명예수당 단가(참전명예수당의 100%, 70%)를 곱하여 추계함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을 승계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계됨

2)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및 단가상승률: 2019~2025년

(단위: 천원)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	단가상승률
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	300	320	340	350	390	420	450	6.99%

자료: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

[표 6]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의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수권배우자 인원(A)		6,769	12,397	17,028	20,790	23,797	—
시나리오1 (참전명예수당의 100% 지급)	월지급액(B, 천원)	515	551	590	631	675	—
	개월수(C, 개월)	12	12	12	12	12	—
	추가재정소요 (D=A×B×C)	41,743	81,988	120,489	157,396	192,758	594,374
시나리오2 (참전명예수당의 70% 지급)	월지급액(E, 천원)	361	386	413	442	473	—
	개월수(F, 개월)	12	12	12	12	12	—
	추가재정소요 (G=A×E×F)	29,290	57,392	84,342	110,177	134,931	416,132

자료: 국가보훈부의 자료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참전유공자 사망, 무공수훈자 배우자 비율과 배우자사망률, 참전명예수당 단가 등의 과거 추이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로,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 비율, 수당단가 등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na.go.kr